

PayVerse 서비스 계약서

_____ (이하 '갑'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롬넷**(이하 '을'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전자결제수단을 이용한 '전자결제대행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 '을'과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운영하는 상점(이하 '가맹점' 이라 한다.)에 있어 '을'이 제공하는 'PayVerse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 (이하'PayVerse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거래승인, 매입, 정산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조건 및 절차 등의 제반 사항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에 대한 정의]

- 1) PayVerse 서비스: '갑'이 이용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을'이 '매입사'와 계약한 사항에 따라 '갑'을 대리하여 '국내외발행신용카드'와 '국내외 APM'에 대한 '거래승인', '매입', '정산' 및 기타 상호 합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2) 매입사: '매입'이 된 거래에 한하여 '을'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3) 매입: '거래승인'을 받은 거래 건에 대하여 그 대금지급을 매입사에 청구하는 것으로 '을'은 '갑'의 매입 요청에 의해 매입사로부터 정산을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4) 거래승인: '가맹점' 이용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제시하는 지불 정보를 '매입사'가 'APM 제공사'의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지불수단의 분실, 한도초과, 연체, 거래정지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 이용자가 제시한 지불수단이 합당한지 확인하여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 5) 국내외발행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 국내 신용카드사업자 및 해외신용카드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를 말하며, 그 범위는 본 계약서 제 3 조 1 항에 따른다.
- 6) 국내외 APM(이하 'APM 제공사'라 한다): 각 국가별 결제사업자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시스템을 지칭한다. 본 결제 수단의 범위는 본 계약서 "별첨 2"에 명기된 리스트에 따른다
- 7) 정산: '을'이 '매입사'로부터 지급받은 거래 대금에서 본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제수수료' 및 '기타수수료' 등 제반 수수료를 제외한 후 지급해야 하는 대금(정산대금)을 결정하여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8) 결제수수료: '갑'이 '을'의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 금액을 말하며, 매 회 정산 시 '갑'은 '을'에게 지급한다. '결제수수료' 요율은 본 계약에서 '갑' 과 '을'이 합의한 요율에 따르기로 하되 '갑'의 거래금액, 거래 취소율, 부정거래(미사용 거래 등)비율 등 '갑'의 매출 및 매입사의 수수료 인상 등 서비스 제공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갑'과 '을'의 합의 하에 변동될 수 있다. 단, '갑'과 '을'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갑'과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9) 기타수수료: 부정거래(미사용 거래 등)에 따른 '을'의 서비스 응대 취급 수수료 등이 부과되어 정산 시 공제할 수 있다.
- 10) 위험관리 시스템: '을'이 관리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로 매월 초 '가맹점'의 부정거래(미사용 거래 등)발생 비율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다. 이 등급은 부정거래(미사용 거래 등)발생비율에 따라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다,
- 11) 차지백: 차지백이란, 입금취소 또는 환불을 의미하며,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신용카드사'의 고객센터서비스이다.

제 3 조 [결제수단의 종류]

- 1) 국내발행신용카드: 별첨 2 에 명기된 신용카드 발급사
- 2) 국내 APM: 별첨 2 에 명기된 간편 결제 수단

제 4 조 [계약자 '갑' 과 '을'의 책임과 의무]

1. '갑'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1) '갑'은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한 전자상거래행위를 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 2) '갑'은 '가맹점'의 이용자가 제시하는 지불 정보가 해당 거래와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지도록 하여야 한다.
 - 3) '갑'은 '가맹점'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항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유무선 및 전자메일 등)를 '가맹점' 상에서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갑'은 '가맹점'의 이용자가 제시하는 지불 정보에 대한 확인 책임과 의무를 지니며, 이용자가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을 통하여 구매취소(청약의 철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 5) '갑'은 '가맹점'에서 실제 판매가 아닌 위장 거래 등의 변칙 된 거래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 감독하는 의무를 지니며,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6) '갑'은 '가맹점'의 판매 거래에 대한 자료(주문 및 서비스 내역 등)를 거래 발생일로부터 최소 5 년간 보관하도록 하며 '을'이 업무 상 필요에 의해 자료를 '갑'에게 요청할 경우 '을'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 7) '갑'은 '을'에게 '결제수수료', '기타수수료' 등의 'PayVerse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 8) '갑'은 '가맹점'의 명의로 결제 대금이 청구됨을 이용자가 인지하기 쉬운 방법으로 '가맹점' 상에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9) 이 외의 책임과 의무는 '갑'은 본 계약이 정하는 대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2. '을'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1) '을'은 이용자가 지불하는 결제수단에 대하여 도난분실, 한도초과, 연체, 기타 거래정지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신용카드사' 및 'APM 제공사'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의 조회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2) '을'은 계약 기간 중 이용자가 구매하는 '가맹점'의 상품과 용역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갑'이 그 대금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당 '매입사'와의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PayVerse 서비스'를 위하여 그 시스템을 구축 제공하여야 한다.
 - 3) '을'이 제공하는 결제 수단은 제 3 조 결제 수단의 종류 범위 내에서 '을'이 계약한 '매입사'가 제공하는 결제 수단에 한하며, '매입사'가 '을'과 계약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 4) '을'은 '갑'의 판매대금 '정산'과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 시스템 제공 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 5) '을'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영업과 관련된 법률 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6) '을'은 'PayVerse 서비스'를 연중무휴 24 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의 점검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필요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서비스를 일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서비스 중단 5 일 전까지 서비스 중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7) 이외의 책임과 의무는 '을'은 본 계약이 정하는 대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제 5 조 [서비스 이용 조건]

- 1) '을'이 제공하는 'PayVerse 서비스'에 적용되는 결제수단의 종류는 '을'이 제휴한 '신용카드사' 및 'APM 제공사'에 한한다.
- 2) '을'의 'PayVerse 서비스'가 적용되는 '가맹점'의 판매 물품 및 서비스는 본 계약 체결 시 '갑'이 '을'에게 고지 설명한 물품 및 서비스에 한하며 품목을 추가할 경우 '갑'은 '을'에게 반드시 사전에 서면을 통하여 통보하고 서비스 제공 동의를 얻어야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 3) '갑'이 발생시킨 거래 정보에 대해선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한다. 단, '갑'과 '을'은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본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 정보를 거래 발생일로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거래 정보는 본 계약의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 4) '갑'은 '가맹점'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지불정보에 대하여 보유하거나 이용자의 지불정보를 대행 입력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조 [거래 한도 및 보증금]

- 1) '을'이 '갑'에게 거래 한도를 부여함과 동시에 거래 보증금 또는 '갑'의 매출 보전 및 과실에 의한 '을'의 손해보전 등을 위해 '갑'이 정산을 받을 때마다 '을'은 모든 판매 거래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정산 금액의 일정 비율로 미지급 준비금(Rolling Reserve) 금액을 보류할 수 있다. '을'은 미지급 준비금(Rolling Reserve)을 '갑'과 합의한 비율에 대해 정산 시 차감하고 합의된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다. 미지급 준비금(Rolling Reserve) 비율과 합의된 기간은 이 계약의 "별첨 2"에 명시한다.
- 2) '을'은 '갑'이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비정상적으로 매출 비율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별첨 2"에서 정하는 미지급 준비금(Rolling Reserve)등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 3)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미지급 준비금(Rolling Reserve)을 대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한도 부여는 아래 "별첨 2"의 내용을 따른다.
- 4) '갑'과 '을'은 상호 협의 하에 위에 명시 되어있는 보증금 이외에 추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보증금의 금액은 '을'이 '갑'의 가맹점의 업종에 따라 산정하며, 본 보증금은 '신용카드사' 및 'APM 제공사' 규정에 따라 거래 취소가 일어나지 않은 일로부터 최대 540일이 경과한 이후 가맹점에 지급할 수 있다. 단, 해당 보증금은 540일이 경과하더라도 '을'이 매입사에게 모든 정산금액을 받은 이후 지급이 가능하다.

제 7 조 [매 입]

- 1) 본 계약에 의한 매입 대상 거래는 '거래승인'의 주체로부터 승인받은 '거래승인' 건으로 제한된다.
- 2) '신용카드사' 및 'APM 제공사'의 매입 주기는 '을'과 매입사가 서면 합의된 내용에 따른다.

제 8 조 [정 산]

- 1) '을'은 '을'이 제공하는 'PayVerse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진 정상 거래 건에 대한 정산대금을 본 계약에서 정한 정산주기에 따라 '갑'에게 지급한다.
- 2) '을'의 '매입사'로부터 정산대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정산할 의무가 없다.
- 3) 정산금액은 제반 수수료 공제 후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갑'이 부도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법 등의 거래 또는 유사한 형태로 의심되는 경우에 '을'은 '갑'에게 사전 통보하고 '갑'에 대한 정산금액 일부 또는 전체를 지급 보류할 수 있다.
- 5) '을'이 '갑'에게 정산 기지급 이후 발생한 취소 및 환불 거래금액은 차 회 정산 시 공제 후 지급한다. (단, 1개월 이상 정산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게 초과 지급액 또는 차감 부족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
- 6) '갑'의 정산대금이 부득이한 상황(거래 종료 후 발생하는 환불, 부정거래(미사용 거래 등) 및 거래 수수료 등)으로 역환금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금액에 대해 입금 요청을 할 수 있다. '을'의

- 요청대로 '갑'의 역환금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게 개설된 가맹점 상점 ID 의 정산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 7) '을'이 '갑'에게 지급할 정산 대금은 상호합의 하에 설정된 최소 송금금액 이상일 경우 지급되며, 최소 송금금액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 지급 보류 정산 금액이 최소 송금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지급 보류한다.
 - 8) '을'은 '갑'이 최소 송금금액이 도달하지 않아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마지막 지급 보류일부터 최대 540 일 이후 가맹점의 요청이 있을 시 정산할 수 있다. 단, 540 일이 경과해도 '을' 이 '매입사'로부터 모든 정산금액을 받은 이후 지급이 가능하다.
 - 9) '을'이 '갑'에게 정산대금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은행 중개 및 수취 수수료에 대해 '갑'이 부담을 하며 지급 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 10) '매입사'에 의해 '갑'의 상점 ID 가 해지되어 '을'이 대금을 못 받았을 경우 '갑'에 대한 정산 대금 지급은 중단되며, '을'은 '매입사'로부터 고객의 모든 거래에 대해 대금을 받는 시점까지 '갑'의 자금을 보유할 수 있으며, 보유하는 이유는 향후 발생할 환불 및 부정거래(미사용 거래 등) 건을 예방함에 있다. '을'이 매입사로부터 모든 정산금액을 지급받았으며, '갑'의 상점 ID 가 거래 종료 후 1 년 동안 환불 및 부정거래(미사용 거래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을'은 '갑'에게 순차적으로 정산금액을 지급한다. 단, 환불 및 부정거래(미사용 거래 등) 미발생 기간이 1 년을 경과하더라도 '을'이 '매입사'로부터 모든 정산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 '을'은 '갑'에게 정산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 9 조 [취 소]

- 1) '가맹점'이용자의 거래 취소에 대한 취소 처리는 '갑'이 실행하기로 한다. 단, 부득이 '갑'이 취소하기 어려운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사유를 서면통지하고 취소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 2) 국내외 신용카드의 취소는 '거래승인'이 된 건에 한해서 취소가 가능하다.
- 3) 국내외 APM 의 취소는 원거래 건의 취소 처리가 불가하므로 '갑'은 '을'에게 별도 취소 요청없이 고객에게 환불을 진행하여 취소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국내외 APM 별로 원거래 취소 처리가 가능하게 될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 4) 정상적으로 제공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가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갑'은 이용자의 취소 요청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거래승인의 취소 여부를 실행할 수 있다.
- 5) 이용자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가 있을 경우 '갑'은 문제없이 처리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6)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 접수되는 이용자의 민원 건에 대해서 '갑'의 책임 하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제 10 조 [사고 등의 처리]

- 1) 이용자가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이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갑'의 책임 하에 처리되어야 하며 처리되지 않은 사고 금액에 대해선 정산금액에서 공제한다.
- 2) '가맹점'에서 발생한 결제수단 관련 개인정보에 대해 임의로 도용, 배포 등의 사건으로 관공서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을'에게 해당 관련 정보가 요청된 경우, '갑'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갑'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단, '을'은 해당 민원의 제기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 3) 부정한 방법 등으로 판매된 부정 매출의 경우 이를 '을'이 발견하였다면 '을'은 '갑'에게 해당 사실에 대한 통보한 후 '갑'과 협의하여 이를 해결하기로 하며, '을'은 '갑'에게 해당 대금 '정산'을 해당 문제가 해결되는 기간까지 거부할 수 있다.
- 4) 이용자가 결제수단의 분실, 도난, 본인미사용 등의 이유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민원 건에 대하여 정상 거래에 대한 확인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단, '갑'이 제출한 정상거래 확인 및 증빙이 매입사로부터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최종 부정결제(미사용 거래 등) 건에 준하여 처리한다.

- 5) '을'이 '갑'에게 지급한 '정산' 대금 중에서 이용자의 사용 부인과 미사용 건 중 '신용카드사' 및 'APM 제공사' 또는 '매입사'로부터 '을'에게 지급보류 또는 거절로 결정되어 통지된 거래에 대해서 '을'은 관련 내역을 '갑'에게 통지하고 차회 정산 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만일 '갑'의 차회 이후 정산대금이 없을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갑'은 청구된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 청구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기한 내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게 지급 요청을 서면통보하고 시행되지 않은 경우 '을'은 확보된 담보를 행사할 수 있다.
- 6) '을'은 '갑'의 고의로 인하여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고가 접수될 경우 모든 '정산' 금액을 지급 보류할 수 있으며, 사고의 경중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지급보류 또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입증은 '을'이 해야 한다.
- 7) '갑'의 고의로 인하여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고라 함은 '을'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가맹점' 운영, 상품 및 서비스 판매를 한 경우, '가맹점'에서 발생한 거래의 대부분이 부정거래(미사용 거래 등)으로 나오는 경우 등에 준한다.
- 8) '을'은 위험 관리 시스템에 따라 이메일로 위험 등급을 알릴 것이며, '갑'은 '을'이 요구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9) 위의 7 항과 관련하여 패널티가 부과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과실여부에 따라 '매입사'에서 부과한 패널티를 청구할 수 있다.

제 11 조 [손해배상]

- 1)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 여부는 '갑'과 '을' 중 위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이용자의 이의 제기(이용 사실 불인정, 반환요청 등) 또는 판매 과정에서 '갑'의 과실로 '가맹점' 이용자와 '갑' 간의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다툼에 대해선 전적으로 '갑'이 해결해야 한다.
- 3) 2)항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해결 또는 배상치 못하는 경우 '을'은 거래담보물과 상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거래 담보물이라 함은 미지급준비금(Rolling Reserve)또는 이에 준하는 담보물을 뜻하며, 본 거래 담보물을 통해 배상금을 상계처리 한다.
- 4) 이외 본 계약 기간을 이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귀책 사유를 명확하게 판단하여 귀책 사유를 가진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정산대금의 지급보류]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을'은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단, '을'은 지급보류 사유를 '갑'에게 사전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지급보류 기간은 '을'의 판단하에 아래 항들의 위험요소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까지 정한다.
 - 1) '가맹점'에서 취급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판매 및 현금할인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2) '가맹점'에서 다단계, 회원제, 상품권, 선불제 등의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거나 해당 불법 사업으로 인하여 이후 거래 취소의 우려가 있을 경우
 - 3) 이용자가 사용 사실을 부인(도난, 분실, 위조, 변조 등의 사유도 포함) 등의 이유로 부정거래(미사용 거래 등) 처리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 4) '갑'의 매입 요청 내역이 '매입사'의 지급 내역과 상이한 경우
 - 5) '갑'의 정산금액이 비정상적으로 급증 또는 급감하거나, 정산된 이용자의 거래가 민원, 이의제기 등의 취소 사유를 갖고 있을 경우

제 13 조 [자료의 보관]

- 1) '갑'은 '가맹점'에서 발생한 거래의 물품 및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자 확인에 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을'의 합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갑'은 '을'의 'PayVerse 서비스'를 통하여 '갑'이 보관하는 거래 내역과 '을'이 보관하는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불일치 등을 발견한 경우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갑'과 '을'은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한 매출과 그 관련 자료를 계약해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 발생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갑' 또는 '을' 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서면으로 제공 요청 통지를 한 경우 통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 [정보 및 자료유출 금지]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 및 이용자의 정보와 자료에 관하여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는 제 3자 또는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단, 수사기관 등의 관공서로부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및 협조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만약 상기를 위반하여 계약기간 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 및 이용자의 정보와 자료에 보를 외부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손해를 배상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 15 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는 '갑'과 '을'의 서면합의(팩스, 전자우편 등의 전자문서 포함)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매입사'의 조건변경으로 인해 계약의 일부가 변경된 경우, '매입사'로부터 공문을 수령한 15영업일 이내 서면(팩스, 전자우편, 서면 등)으로 변경내용에 대해 고지를 한다.

제 16 조 [계약의 해지]

1.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최고 또는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 내용이 '갑'의 영업 국가 정부의 인허가 등이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 2) 계약 당사자인 '갑' 또는 '을'의 파산, 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체납처분, 영업 상 주요 자산의 압류 등으로 인하여 영업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 3) 본 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
 - 4) 계약 당사자인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갑'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제 3자에게 양도, 판매하는 경우와 '가맹점'에서 불법 또는 부정한 매출이 발생한 경우
 - 5) '을'에게 사전 서면 동의없이 '갑'이 임의로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변동한 경우
2.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사항을 일부라도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서면 최고 30일 이후까지도 상대방이 시정치 않을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3. 전 항의 사유로 '을'이 계약을 해지할 시 '을'은 이후 발생할 이용자 민원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 17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상대방 중 어느 일방의 서면요청이 없는 한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갱신 불필요의 통보를 한 경우엔 본 계약은 해지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별첨 1]

[사업자 정보]

상 호		대 표 자 명	
업 종		사 업 자 번 호	
전 화		웹 사 이 트 주 소	
사 업 자 주 소		FAX	
담 당 자	성 명	전 화	이 메 일

[정산 입금 계좌 정보]

은 행		지 점	
계 좌 번 호		예 금 주	
SWIFT CODE			

[서비스 가입비 및 연회비]

구분	내역	비고
가입비	100,000 원 (VAT 별도)	면제
연회비	100,000 원 (VAT 별도)	면제

‘갑’ 과 ‘을’ 은 상기 서비스를 신청함에 있어 ‘을’ 의 전자결재서비스 표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상의 내용에 대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며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 및 기명 날인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날 짜 년 월 일

<p>(갑)</p> <p>대표이사 _____ (인)</p>	<p>(을) 주식회사 이룸넷</p> <p>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4, 10 층 (대치동, 엘앤비타워)</p> <p>대표이사 민 윤 재 (인)</p>
-------------------------------------------------------------------------	------------------------------------------------------------------------------------------------

[별첨 2]

[결제수단 및 수수료]

(VAT 별도)

구 분		수수료 정보					
국가	서비스	결제 수단	MDR %	TR Fee	RF Fee	CB Fee	비고
국내	신용카드	삼성, 신한, 비씨, 광주, 수협, 시티, 제주, 국민, 전북, 현대, 하나, 롯데, 농협, 우리	3.9%	-	-	-	
	간편결제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애플페이	4.0%	-	-	-	

MDR : 거래 승인 시 발생하는 결제 수수료

TR Fee : 거래 승인/거절 시 발생하는 건당 수수료로 MDR 과 별개로 승인 시 추가로 발생하는 수수료이며 승인 거절 시에도 발생하는 수수료

RF Fee ; 거래 환불 시 발생하는 건당 수수료

[결제수단 정산주기]

구 분		정산 정보				
국가	서비스	정산 주기	보증보험/보증금	거래 통화	정산 통화	최소 송금금액
국내	신용카드 간편결제	Weekly(주정산) + 5 *토~금 거래 차주 금요일 정산	보증보험 1 배수	KRW	KRW	KRW 2,000,000

*환율은 정산서에 명시된 환율을 기준으로 하며, 가맹점은 환전 수수료 및 송금수수료를 부담한다.

*정산 지급일 시점 최소 송금금액 미만 시 차 회 정산일로 이월됨

*정산일이 휴일일 시 다음영업일에 정산 예정

*모든 차지백은 1%미만으로 관리 해야함.

날짜 년 월 일

<p>(갑)</p> <p>대표이사 _____ (인)</p>	<p>(을) 주식회사 이롬넷</p> <p>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4, 10 층 (대치동, 엘앤비타워)</p> <p>대표이사 민 윤 재 (인)</p>
-------------------------------------------------------------------------	------------------------------------------------------------------------------------------------